



수 신 수신자 참조

경 유

제 목 식품위생법 준수에 따른 시설 기준 및 필수품목 구비 안내

- 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17]에 따라,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적용 대상: 관내 일반·휴게음식점 및 학교·기타 집단급식소 등

나. 주요 개정 사항: 필수 비치 품목 추가(ATP 오염도 측정기, 온도·습도 측정 장비)

다. 점검 기간: 2026. 4. 1. ~ 2026. 6. 30.

- 3. 미비치 시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(최대 30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불임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불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1. 개정 법령 조문 발췌 1부.

불임 2. 필수 품목 상세 기준 및 설치 방법 1부.

불임 3.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: 관내 일반·휴게음식점 및 학교·기타 집단급식소 등

전결 2026.04.01

담당부서 :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식품안전정책지원팀장 : 신다예 식품안전정책지원과장 : 최성수

전화번호 : 010-4305-0609 FAX : 044-300-5758

www.mfds.go.kr

[16508] 경기도 수원시 도청로 66번길 6, 상가동 지하2층 B216호

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번호	
	업소명(상호)		연락처	
사업장	소재지			
환급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
	예금주		연락처	

[신청 안내]

1. 신청 접수 시 신속성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사업 담당자 직통 번호(010-7506-3645)로 문자(SMS/MMS)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**구매 대금의 100%(전액)를 환급** 지급합니다.
3. 사업 수행 지정업체는 관련 규정 및 업체 사정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신청 전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시점 기준 유효한 '지정업체 승인 정보 및 담당자 인적사항'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: (인/서명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끝.